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804
등록일자	2016.1.28.
결재일자	2016.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김동일	조성률	김화전	이우룡	전결 02/01	황지영
협조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 목차

구 정 연 황	3
장애인 복지 연황	4
1. 장애인 등록 업무	6
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
2-1. 장애인연금 사업	9
2-2. 장애(아동)수당	10
2-3.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11
2-4. 장애인가족출산비용 지원 사업	13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4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6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17
3-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9
3-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21
3-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	23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25
4. 장애인단체 육성 및 복지시설 운영	26
4-1. 장애인 단체 지원	27
4-2. 장애인의 날 및 저소득 장애인 위문격려	30
4-3. 장애인복지관 운영	33
4-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36
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38
5-1.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39
5-2.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	41
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공광점자 전자음성서함 배부	42
5-4.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43
6.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44
6-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45
6-2.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48
6-3. 장애인 편의증진 제공 및 시설 확충	51
6-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53

구 정 연 황

면 적	■ 9.96km ² (서울시의 1.6%) ● 주거 6.34km ² (63.6%) ● 상업3.62km ² (36.4%)		
인 구	■ 59,321세대 125,733명 ※ 주간활동인구(추정) 350만명 ■ 등록장애인 5,782명 (총 인구대비 4.6%)		
주 택	■ 44,546호 ● 단독주택 : 11,509호(26%) ● 다세대 : 6,247호(14%) ● 연 립 : 3,057호(7%) ● 아파트 : 23,733호(53%)		
재정현황	■ 구청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 334,727백만원 ※ 2015년 구청 전체 일반회계 본예산 288,092백만원		
장애인 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예 산 액	6,657	7,174
		구전체 예산대비 2.31%	구전체 예산대비 2.14%
	사업별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287
장애인생활안정보호		2,197	2,200
장애인편의제공		141	249
장애인자립생활지원		3,031	3,394

장애인 복지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2015. 12월말 현재)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5,782	2,892	714	555	30	321	630	48	237	199	19	137

※ 기타내역 : 호흡기33, 간28, 안면변형6, 장루-요루45, 뇌전증25명

장애인단체 및 단체장 임기 현황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연 혁	소 재 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최민오	982	1991. 7.19	을지로39길 40(구민회관)
			2000. 5.20	퇴계로 460 유락복지관 3층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한방희	120	2005. 3. 9	퇴계로12길 17(보건분소)
			2008. 1.20	퇴계로20길 41-11 1층
농아인협회 중구지부	김두현	399	2005. 3. 9	퇴계로12길 17(보건분소)
			2008. 1.20	퇴계로20길 41-11 2층
지적장애인협회 중구지부	김경일	200	2009. 2.12	다산로22길 11(신당동)

※ 3개 단체 사무실 : 우리구 소유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지원
- 지적장애인 중구지부 : 지부사무실 임차보증금(2억원) 지원<2009.4월>

단체명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임기 (년수)	연임규정 (횟수or연임 가능여부)	임용기간	
						임용일	만료일
(사)서울지체장애인 협회중구지회	회장	최민오	51.1.1	3	가능	2014-1-1	2016-12-3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회장	한방희	49.10.21	4	가능	2014-2-1	2017-1-31
	국장	조재형	72.1.6.	없음	회장이임명		
(사)농아인협회 중구지부	회장	김두현	59.1.30	4	가능	2013-2-1	2016-1-31
(사)지적장애인복지 협회 중구지부	회장	김경일	61.8.11	4	가능	2009-1-29	2017-1-28

■ 장애인시설 현황 : 10개소(지역사회재활 7, 거주 2, 직업재활 1)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장	운영단체	소재지	신고일	규모(㎡)	
지역사회재활	복지관 (1개)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퇴계로460 (신당동)	2013.03.08	1,100.99
	주간보호시설 (5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한방희	(사)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퇴계로207길41-11 (남산동2가)1층	2008.12.03	113.19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성옥	(사)시각장애인여성회	퇴계로307길15-3 (필동1가) 하나로빌딩4층	2004.02.28	105.00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김경일	(사)직장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다산로22길11 (신당동)	2009.05.28	90.74
		영락주간보호센터	장은희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수표로33 (저동1가)	2009.10.05	277.79
		남산골주간보호센터	김두현	(사)울봉연합회 중구지부	퇴계로207길41-11 (남산동2가)3층	2013.04.10	101.9
	수화통역센터 (1개)	중구수화통역센터	김두현	(사)울봉연합회 중구지부	퇴계로207길41-11 (남산동2가)2층	2002.05.31	92.10
거주	공동생활가 (2개)	제4살롱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경일	(사)직장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청구로104-5 (신당동)	2002.07.08	77.83
		하늘마음공동생활가정	김경일	(사)직장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동호로11나길35 (신당동)	2013.08.14	156.73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1개)	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김영숙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서예로57길15-17 (필동3가)	2007.09.21	222.85

■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3개법인) 단위:천원

구분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	시설수	소재지
			기본재산		
시설법인	대한성공회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김근상	1998. 112,110	13개소	정동 3
	전인계발 연구재단	양현봉	1999. 5. 278,000	-	퇴계로286(쌍림동) 쌍림빌딩 6층 1호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김영숙	2007. 6. 4 1,060,000	2개소	필동3가 39-3호 정문빌딩 301호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기관(4개기관)

운영기관명	운영법인	대표자	소재지	신고일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인권포럼	김성은	퇴계로 382(신당동) 태화빌딩3층	2008. 1. 1
중구자활센터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대성	세종대로2길 15 (남대문로5가)	2004. 4. 1
(사)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중구지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방희	퇴계로207길41-11 (남산동2가)1층	2007.1.22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조성옥	퇴계로307길15-3(필동1가) 하나로빌딩4층	2004.2.28

1 장애인등록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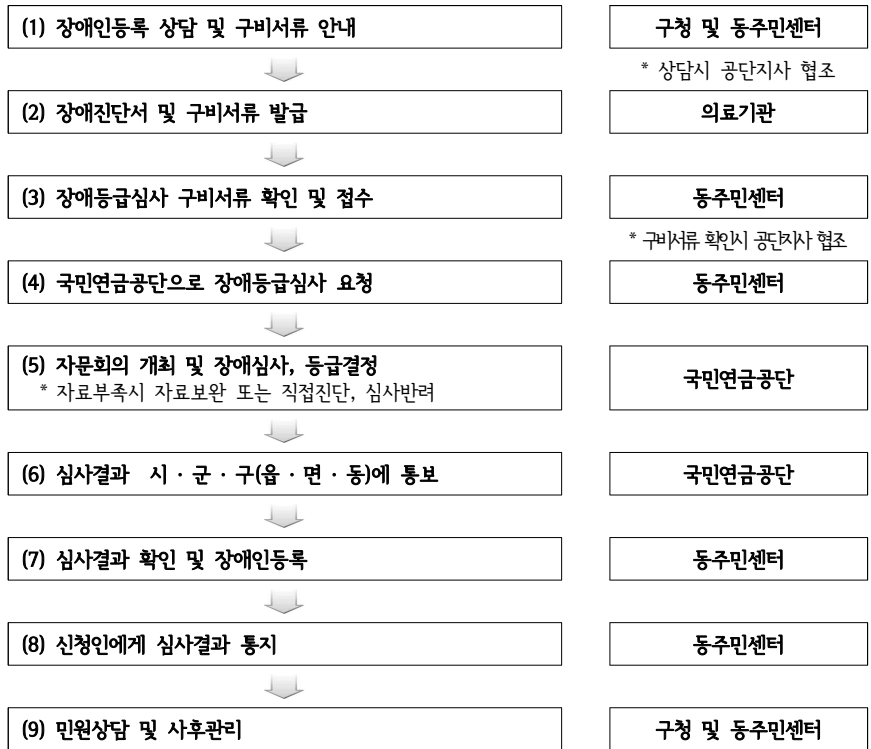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인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원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구 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 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액

1.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독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판정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원

소요예산

- 매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 후 예산 집행 (국비 30%, 시비 70%)

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세부추진목표

-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
-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년 예산	재원
2-1. 장애인연금 지원	1,749,108	국:시:구비 (50:32.5:17.5)
2-2. 장애(아동)수당	582,131 (국시비매월지급, 2015년기준)	국:시비 (50:50)
2-3.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78,122 (국시비매월지급, 2015년기준)	국:시비 (50:50)
2-4. 장애인가족출산비용 지원사업	3,000	구비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비예산

2-1 장애인연금 지원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 (법시행일 : 2010. 7. 1.)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소득 및 연령기준에 따라 월 4~28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18~64세 단독가구 (280,000원)	18~64세 부부가구 (240,000원)	65세 이상 (280,000원)	18~64세 단독가구 (최대 270,000원)	18~64세 부부가구 (최대 230,000원)	65세 이상 (140,000원) ※중전 장애수당 수급자	65세 이상 (70,000원) ※중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자	18~64세 (최대 2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통합조사팀 적격여부 조사 후 사회복지과 통보 → 사회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서 발행, 급여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6 연중 : 신청 접수
- 매월 20일 : 장애인연금 정기급여 지급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749,108천원 (국비 50%, 시비 32.5%, 구비 17.5%)

기대효과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2 장애(아동)수당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보호수당)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 만 18세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3~6급)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미만의 등록된 장애인(1~6급)
(단 만18~20세로 「초·중·고·대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포함
- 지원금액
 - 장애수당 : 월 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수급자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월 20만원 3~6급 10만원
차상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월 15만원 3~6급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통합조사팀 적격여부 조사 후 사회복지과 통보 → 사회복지과 보장결정 및 통지서 발행, 급여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6 연중 : 신청 접수
- 매월 20일 : 장애수당 정기급여 지급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소요예산

- 매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 후 예산 집행 (국비 50%, 시비 50%)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3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6조(의료비지급), 제38조(자녀교육비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개요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외래 입원진료 의료비 일부 및 장애인용 보장구 본인 부담금(15%) 지원
 - 지원방법 :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된 의료비 지급대상 내역에 의거하여 지급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1~3급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구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인정액	(월/원)	802,465원 이하	1,366,362원 이하	1,767,594원 이하	2,168,828원 이하	2,570,061원 이하	2,971,293원 이하	3,372,526원 이하

○ 지원내용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연1회)	학용품비 (연2회)	부교재비 (연1회)	비고
초등학교	.	.	.	38,700원	의무교육
중학교	.	.	52,600원 (1,2학기 26,300원씩)	38,700원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포함)
고등학교	학교장 고자금액 전액	129,500원	.	.	.

- 지원방법 : 분기별 신규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적변동 조회 후 교육기관 및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세부지원내용

교부 품목	지원금액 (1인당)	지원대상자 유형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천원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350천원	
음성유도장치	20천원	시각장애
음성시계	20천원	
시각신호표시기	150천원	청각장애인
진동시계	30천원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200천원	뇌병변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0천원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천원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천원	
접시 및 그릇	50천원	
음식 보호대	50천원	
기립 훈련기	1,500천원	
헤드폰(청취중독기)	120천원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800천원	
문자판독기	800천원	
목욕의자	600천원	1~2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녹음 및 재생장치	500천원	시각장애인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원

세부추진계획

- 2016 연중 : 신청 접수후 지원

소요예산

- 분기별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후 예산 집행 (국비 50%, 시비 50%)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4 장애인가족출산비용 지원 사업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대상자 확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056)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추진방향

-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및 사회통합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 국·시비 지원 후 차액분 및 4~6급에 대하여는 구비에서 지원
단,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함
- 지원금액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합계	국·시비	구비
여성장애인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1~2급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3~6급	100만원	100만원	-
남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1~3급	100만원	100만원	-
	4급	70만원	-	70만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회복지과 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6 연중 : 신청 접수 후 지원

소요예산

- 매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재배정) 후 예산 집행 (국비 50%, 시비 50%)
- 총 사업비 : 3,000천원 (구비 100%)

기대효과

- 저출산사태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2-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대여 등)

추진방향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 대여자에 대한 상환 시 까지 지속적 관리

사업개요

- 신청 시기 : 연중
- 대여기준 및 대여조건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대여조건

용자조건		
한도액	이율	용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구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처리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동 주민센터 담당이 사실조사
-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조사
- 사업계획서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금융기관 추천
- 대여 대상자가 금융기관 방문하여 자금 대여

세부추진계획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 방법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점검시기 :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 점검방법
 - 대 여 자 : 사업지속 여부 및 상환 여부 등 확인
 - 금융기관 : 연 1회 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파악

기 대 요 과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추진목표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별 일정비율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충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년 예산	재 원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439,675	국:시:구비 (30:35:35)
3-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606,927	국:시:구비 (42:33:25)
3-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151,700	국:시비 (50:50)
3-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	220,000	국:시:구비 (50:25:25)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비예산

3-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추진 방향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도모

사업 개요

- 사업종류 및 기간

구분	사업설명	사업기간	사업인원
복지 일자리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	2016.1~12월 (12개월)	23명
일반형 일자리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	2016.1~12월 (12개월)	19명

- 사업수행기관

- 장애인복지일자리 (단위: 명)

사업수행기관	복지일자리 구분	인원	비고
계		23	*근무시간: 월 56시간 *보 수: 월 338천원
길벗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6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장애인주차단속보조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안마서비스	9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급식도우미	4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단위: 명)

사업수행기관	복지일자리 구분	인원	비고
계		19	*근무시간: 주 40시간 *보 수: 월 261천원 (4대보험료포함)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지원	1	
동주민센터	복지 및 일반행정지원	13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5	

세부추진계획

- 2016. 1 :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 2016. 5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 2016. 12 :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및 정산
- 2016. 12 : 2017년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 모집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439,675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기대 효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3-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5조(활동지원급여의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추진방향

- 이용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이용자 만족도 증대 및 제공기관의 적정 관리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 1~3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중 연금공단 방문조사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 ※ 만 65세 도래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지원단가 : 시간당 9,000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지원시간에 따라 25,800원~102,200원 납부
 -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은 20,000원 정액 납부
- 재원주체별 사업내용
 - 국고보조 매칭사업(국50%:시25%:구25%)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7~62시간 지원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시비 100%)
 - 1등급(독거포함) 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 월 200 시간 추가지원
 - 구비 추가지원사업(구비 100%)
 - 서울시추가지원 대상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 곤란한 1등급 최중증 장애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최대 월50시간 추가지원

제공기관 운영현황

○ 지정기간 : 2015. 1. 21. ~ 2017. 1. 31.(2년간)

센터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퇴계로 382 태화빌딩 3층	운영비지원 -월30만원 사무실임대료지원 -월200만원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정대성	세종대로1길 15 중구상공회 2~3층(남대문로5가)	무상임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중구지회	한방희	퇴계로20길 41-11 1층(남산동2가)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성옥	퇴계로30길 15-3 하나로빌딩 4층(필동1가)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하여 대상자별 인정조사표 작성 및 등급설정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인정조사표 및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판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상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 이용대상자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및 제공기관 안내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제공기관 운영·관리(실태점검)
 - 점검기간 : 연1회 이상
 - 점검방법 :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방문 점검

소요예산

- 사업별 소요예산 : 2,606,427천원
 - 국고보조 : 2,260,7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구비 추가지원 사업비 : 101,492천원 (구비 100%)

기대효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3-3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추진방향

- 이용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이용자 만족도 증대 및 제공기관의 적정관리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구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추진기간	연 중	
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 · 부모 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미술·음악·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등 언어재활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지원횟수	월 8회 (제공기관에 따라 다름)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22만원 ※ 본인부담금 : 수급자(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4만원~6만원)	

- 제공기관 운영현황

- 지정기간 : 2015. 1. 21. ~ 2017. 1. 31.(2년간)
- 운영내용

기관명	소재지	프로그램운영		
		이용료(1회)	월 이용횟수	프로그램 구성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	50분/30,000원	8회	인지,언어,놀이,음악, 미술,심리운동치료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	50분/28,000원~30,000원 (언어진단 50,000원)	8회	언어,놀이치료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	50분/30,000원	8회	언어,미술,놀이, 특수체육치료
행복한 언어치료실	동호로14길2 만포빌딩3층	50분/45,000원 (감각통합 55,000원)	8회	인지,언어,놀이, 감각통합치료
보아스음성언어센터	다산로 106 한두빌딩 502호	50분/36,667원 (재가방문 55,000원)	8회	언어치료 (재가방문 가능)

-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수준을 적용하여 등급설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상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 이용대상자 홍보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및 제공기관 안내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제공기관 운영·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연1회
- 점검방법 :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방문점검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51,700천원 (국비:시비=50%:50%)

기대효과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증진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3-4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1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방향

- 이용자 만족 증대
- 제공기관의 적정관리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3월 1일 ~ 12월 31일(10개월)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35명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가구특성 :
 - 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②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 ③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포괄적 안마서비스 제공
 - 서비스단가 : 월 15만2천원(정부지원금 13만6천8백원, 본인부담금 1만5천2백원)
 - 서비스 제공주기 : 월 4회, 회당 1시간, 총 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

제공기관 운영현황

센터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전통안마지압원	이병제	중구 퇴계로88길 61 3층	2238-8085	
약수안마원	신영실	중구 동호로10길 30	2230-3040	
남산안마원	한방희	중구 퇴계로16길 35-21	753-3412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소득조사 및 해당질환 등 적합여부 판정(사회복지과)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사회복지과)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대상자 통보

세부추진계획

- 이용대상자 홍보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지원내용 및 제공기관 안내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제공기관 운영·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연1회 이상
 - 점검방법 :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방문 점검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220,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기대효과

-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 노인·장애인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별 일정비율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충
-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

사업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실적 제출
 - 2016년 안전행정부 정부합동평가 평가 대상 : 구매액 1% 이상 달성 목표
 - ※ 2015년 실적 : 3.6% 달성
 - 685,279천원(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 19,518,655천원(총구매액)

세부추진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계획 수립
 - 수립기간 : 2016년 4월
 - 수립내용 : 2016년 전부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홍보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구매 홍보

기대효과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 촉진 효과

4 **장애인단체 육성 및 복지시설운영**

세부추진목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를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자립 능력 강화
- 중구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주요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년 예산	재원
4-1. 장애인 단체 지원	163,676	시비/구비
4-2.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저소득 장애인 위문격려	43,400	구비
4-3. 장애인복지관 운영	1,088,955	시:구비 (90:10)
4-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492,501 (2014년 기준)	시비

4-1 장애인 단체 지원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추진방향

- 장애인단체의 각종 사업에 장애인 참여율 제고
-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개선
-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장애인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소재지	신고일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최민오	982	퇴계로 460(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3층	1991. 7. 19
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	한방희	120	퇴계로20길 41-11 (남산동2가) 1층	2007. 1. 22
농아인협회 중구지부	김두현	399	퇴계로20길 41-11 (남산동2가) 2층	1998. 11. 9
지적장애인협회 중구지부	김경일	200	다산로22길 11 1층	2009. 2. 12

☐ 단체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단체	추진시기	참여인원	사업내용	지원금액
계					86,100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2016년 연중	982명	○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440천원×12월)	5,280
		2016년 연중	719명	○ 시각·농아인 지적협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300천원×12월×3개소)	10,800
이동차량 지원 (휠체어·프린트 장책)	지체장애인협회	2016년 연중	982명	○ 중증장애인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이동차량 운영비 지원 (1,000천원×4분기)	4,000
농아인 전산교육사업	농아인협회	2016년 연중	240명	○ 농아인 전산교육비 지원 - 30개 프로그램 운영 (560천원×12월)	6,720
장애인의 날 위문격려	장애인복지관	2016. 4월	1,400명	○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기념행사, 단체별지원 20,000천원 ○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품 - 16천원×1,400명=22,400천원	42,400
체육대회참가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2016. 5월 2016. 10월	300명	○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 지체 4,000천원, 농아 2,000천원, 지적 2,000천원	8,000
하계수련대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2016. 7월 ~ 10월	300명	○ 장애인단체 수련대회 지원 - 지체 4,800천원, 시각 2,000천원, 농아 2,000천원	8,800

☐ 기타 지원내역

구분	지원단체	지원내역
사무실 공간지원	구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중구종합복지센터 (3층) 남산점터(시각 지하층, 1층, 농아 2층, 3층)
	임차료 지원	지적장애인협회 임차보증금 4억지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세부추진계획

☐ 보조사업 지원 방법

-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결과 제출 (장애인단체 → 구청)
 - 연간 사업계획서 및 행사계획서 제출
 - 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정산보고
 - 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결과 보고
- 사업비 지원(구청 → 장애인단체)
 -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분기별 또는 사업시행시기 지원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충

- 전반적인 사업추진 지도·감독 실시
- 단체사업 추진실적 등 지도·점검
 - 점검회수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사업수행 실적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사업참여인원 및 운영 전반사항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42,590천원
- 예산과목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180,676	
장애인복지시설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91,076	구 50%, 시 50%
	장애인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20,080	
			사회복지보조	6,720	
장애인단체사업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26,000	구 100%	
장애인생활안정보호	장애인행사지원 (체육대회, 수련회 등)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36,800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및 자신감 향상
-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기여

4-2 장애인의 날 및 저소득 장애인 위문격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추진방향

- 적극적인 행정 및 예산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 장애인단체 주도의 행사개최를 유도하여 장애인들의 참여의식 고취
-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 장애인의 날 행사
 - 행사명 :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2016 중구 장애인 위안잔치
 - 행사일시(예정) : 2016. 4. 20(수) 14:00 (※ 4. 20 : 장애인의 날)
 - 행사장소 : 구민회관
 - 참석대상 : 약 1,400명(장애인 1,350, 내빈 30, 자원봉사자 20)
 - 행사내용 : 기념식(1부) 및 경품·위문품 제공(2부)
 - 행사주관 : 중구장애인복지관
- 위문격려
 - 위문대상 : 1,400명
 - 위문일시 : 장애인의 날 행사
 - 위문기준
 - 장애인의 날 기념품 : 1인당 16,000원 상당 기념품

세부추진계획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16. 4월
-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 개최 : 2016. 3월
 -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단체 추진회의 개최
- 행사비 지원 : 43,400천원
 - 행사진행비 및 위문품 구입비 지원

장애인의날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질서유지 및 안전요원 : 5명 (장애인복지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 활용)
- 구민화관 장소 및 음향장비 등 지원 : 총무과
- 행사장 주변 교통청소정리 :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장애인 위문격려 방법

- 장애인의 날 행사 : 행사참여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기념품 지급

추진일정

- 행사 추진관련 단체회의 : 2016. 3. 5 ~ 3. 13.
- 장애인의 날 행사계획 수립 : 2016. 3. 25 ~ 3. 31.
- 행사물품 구입 및 준비 : 2016. 4. 1 ~ 4. 17.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43,400 천원(구비 100% 지원)

○ 예산과목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43,400	
장애인생활안정보호	장애인위문격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2,400	
	장애인행사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기대효과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인식개선의 기회제공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4-3 장애인복지관 운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1조

추진방향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직업·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시설현황
 - 위 치 : 퇴계로 460(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 세부시설 배치내역

구분	면적(㎡)	용도
계	1,100.99	지상2층, 4층 및 5층 일부
지상2층	483.11	체력증진실, 직업활동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조리실습실, 사무실
지상4층	486.35	치료실1~4, 자조모임실, 상담실, 세미나실, 사무실, 관장실
지상5층	131.53	성인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자실

- 홈페이지 : <http://www.jgcr.or.kr/>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수탁체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유경춘)
 - 위탁기간 : 2013. 3. 8 ~ 2018. 3. 7(5년)
 - 직원현황 : 정·현원 26명(시설장 정진옥)

조직	합계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가족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문화활동지원팀	지역사회지원팀	기획운영지원팀
인원수	26명	1명	1명	5명	6명	3명	5명	5명

○ 운영프로그램 참여대상 및 세부내용

- 참여대상 : 중구 장애인
- 프로그램 운영

사업분야	주요대상	내 용
가족지원	장애인 및 가족	- 상담(본인, 가족, 동료 등) 및 사례관리 - 가족 캠프
사회심리재활	장애인 및 가족	- 상담(본인, 가족, 동료 등) 및 사례관리 - 평생교육프로그램(문자해독,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 - 가족지원(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형제자매교육, 힐링여행) - 성인주간보호(사례관리,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 스포츠 및 여가지원사업(향초만들기, 장애인생활체육, 영화, 미술, 방송댄스, 종이접기,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여행) - 인문학교육 - 중구 장애인체육대회 - 보건소 연계 재활학교
의료재활	지체, 뇌병변, 발달장애인	- 치료(언어, 인지, 감각통합활동, 작업치료) - 운동발달치료(자가운동, 재활체육 등) - 찾아가는 진단서비스(관내 보육시설 대상)
직업재활	발달장애인	- 직업지도(직업상담, 직업진단 등) -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바리스타양성, 취업 및 사후관리) - 청소년 진로교육(전환교육, 현장체험)
지역사회지원	재가 장애인	- 지역사회조사, 지역네트워크, 지역조직행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 후원자개발 및 배분 -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사례관리, 문화체험, 나눔이,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식생활, 주거, 위생, 차량, 건강관리, 정서지원)

○ 장애인의 경제수준향상 및 권익신장을 위한 중점추진사항

- 장애인직업재활훈련을 통한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취업연계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채용 시 정원의 3%이상 채용

○ 2015년도 이용 실적

- 1일 평균 이용자 수 : 151명 (연 이용인원 : 총 24,378명)
※ 장애인 18,210/비장애인 6,168, 남자 13,332/여자 11,046
-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록 장애인수 : 609명
- 등록 자원봉사자수 : 559명
- 등록 후원자수 : 84명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수행 지원 및 관리(지도·점검)
 - 사업지원 : 분기별 보조금 지급
 - 지도점검 : 정기점검 연1회, 수시점검 연2회이상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1,088,955천원(시90%, 구10%)

기대 효과

-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등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4-4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추진 방향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시설의 제공 프로그램 및 각종 서비스 질 향상
-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사업 개요

시설현황

장애유형	시설명	운영기관	대표자	장기/단기명	소재지	연락처
청각,언어	중구 수화통역센터	(사)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부	김두현	-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	3789-3268
지적,자폐	제4샬롬 공동생활가정	(사)서울시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김경일	5 / 4	청구로104-5 (신당동)	2253-1664
	하늘마을 공동생활가정	(사)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		4	동호로11나길 35(신당동)	2235-8708
	파란마을 주간보호센터	(사)서울지적장애인 복지협회중구지부		15 / 15	다산로22길 11 (신당동)	2235-8708
시각	여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시각장애인여성회	조성옥	10 / 10	퇴계로30길15-3 (필동1가)	318-1672
시각	시각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중구지회	한방희	15 / 15	퇴계로20길41-11 (남산동2가)	774-0085
지적,자폐,뇌병변	영락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장은희	15 / 11	수표로33 (저동1가)	2280-027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 분기별로 시설명의 전용계좌에 입금 후 교부통보
 - 정산보고 : 분기종료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 분기별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중구 수화통역센터, 제4살롱-하늘마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개소(여성시각, 시각, 파란마음, 영락, 남산골)
 - 보조금 지원 내역 : 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 지출
 -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보조금 운용 현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등 시설 지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각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운영실태 및 서류 등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의 적정 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출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실시기간 :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대비 등
 -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화재 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책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총 764,105천원(2015년도 기준, 시비 100%)

연번	시설명	보조금 지원액(원)	비고
	계	764,105천원	
1	제4살롱공동생활가정	38,131천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2	하늘마음공동생활가정	43,056천원	
3	중구수화통역센터	156,132천원	
4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1,931천원	
5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12,590천원	
6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114,886천원	
7	영락주간보호센터	101,588천원	
8	남산골주간보호센터	95,791천원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사회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 제공
-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통한 가족의 보호 부담 경감

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세부추진목표

-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수리지원(지체장애인), 중구소식지 접자판 및 녹음테이프지원(시각장애인), 체육활동지원(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 사회적 약자(장애인·노약자 등)에게 지역사회 내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참여 지원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2015년 예산	재원
5-1.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4,000	구비
5-2.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	5,000	구비
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점자책자, 전화음성서비스 배부	14,270	구비
5-4.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01,940	시:구비 (50:50)

5-1 장애아동 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추진방향

- 체육활동 참여기회 증진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
- 신체기능을 강화하여 스포츠참여능력 제고
- 장애아동의 가정 지지체계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예산 : 24,000천원(구비 100% 지원)
- 수행기관 : 중구장애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대상 : 초·중·고등학생 발달, 지적장애아동 40명
- 사업내용 : 그룹체육교실, 무용교실, 수영교실, 캠프 및 야외활동 등

프로그램명	사업대상	추진방법	사업장소
그룹체육교실	초등학생 5명, 중·고등학생 5명	- 회기 : 27회기/연 - 내용 : 신체기능발달 및 그룹상호작용증진을 위한 그룹체육, 부모참여수업, 가족체육대회	신당복지관B1층 심리운동치료실
무용교실	초등학생 12명	- 회기 : 56회기/연 - 내용 : 신체이완활동, 부모참여수업, 따또 무용단개설 작품발표회	신당복지관B1층 심리운동치료실
수영교실	초등학생 3명, 중·고등학생 10명	- 회기 : 12회기/연 - 내용 : 개별 수영강습, 자유물놀이 및 수중집단게임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기초체력 및 영역별 주관적 관찰 평가	관내 지적·자폐성 중고등학생 20명	- 회기 : 2회/분기 - 내용 : 신체활동, 생활체육, 기초체력평가, 연합체육대회 - 수행방법 · 각 학교 주1회 규칙적인 신체활동 진행 · 연간 2가지 이상의 생활체육 종목 진행 · 연 2회 기초체력 평가 · 연 2회 학교, 학부모, 강사 간담회 · 연 1회 연합 체육대회	장애인복지관,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세부추진계획

- 사업수행 지원 및 관리(지도·점검)
 - 사업지원 : 반기별 보조금 지급
 - 교부신청서에 의거 지급 반기별 지급
 - 반기별 집행실적 제출(중구장애인복지관, 신당복지관)
 - 지도점검 :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전반 지도·점검
 - 점검회수 : 연 1회
 - 점검방법 : 사업수행 실적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프로그램 참여인원 및 운영 전반사항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24,000천원 (구비 100%)

기대효과

- 장애아동의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 지원
- 장애아동의 사회정서·신체적 성숙 유도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지적 기반 형성

5-2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 이용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만족도 증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연간 20만원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수리비의 50%(연간 10만원 이내)
- 수리물품 : 일반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지원센터 : 7개소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수리지원센터 선정수리 → 수리지원센터 사회복지자 비용청구 → 사회복지자 수리 내역 확인 후 비용지급

세부추진계획

- 2016. 연중 : 신청 접수 후 지원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5,000천원 (구비 100%)

기대효과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점자, 전화음성사서함 배부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추진방향

- 정보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정소식 신속 전달
- 중구광장 점자판 및 음성사서함 제작, 배부하여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제공

사업개요

- 중구광장 점자판 및 전화음성사서함 제작
 - 관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구광장 점자판을 제작
 - 점자를 익히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전화음성사서함도 함께 제작하여 배부
- 배부대상 : 관내 거주하는 시각 1급 ~ 3급의 시각장애인 180여명

세부추진계획

- 제작·배부 현황 (※ 격월로 제작, 배부)
 - 중구광장 점자판 : 연6회, 약1,080부 제작·배부
 - 중구광장 전화음성사서함 : 이용자가 전화를 걸어 사서함을 통해 중구광장 청취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4,270천원 (구비 100%)

기대효과

-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접근 권리 제공
- 구정에 대한 신뢰감 제고에 기여

5-4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운영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추진방향

-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개·보수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사업개요

- 위탁기관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정선희)
 - 위탁기간 : 2015.01.01~2016.12.31 (최초 위탁일 : 2003.01.03)
- 운행차량 :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71더2504)
- 운행지역 : 중구 및 인근지역의 정해진 노선
 - 운행노선 : 한국자유총연맹 외 19개 정거장
 - 운행시간 : 월~금(일5회) 07:30~19:40 , 토요일(일4회) 07:30~17:10

세부추진계획

-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 및 파손시 즉시 보수
- 지속적인 차량관리 및 환경미화를 통한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05,812천원 (시비 50%, 구비 50%)

기대효과

-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지역사회 내 이동편의 증진
-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교통수단 제공으로 사회참여 지원

6 장벽없는 환경 만들기

□ 세부추진목표

-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이 불편함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적정 관리 모니터링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계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 추진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년 예산	재원
6-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91,076	시:구비 (50:50)
6-2.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70,020	국:시:구비 (30:35:35)
6-3. 장애인 편의증진 제공 및 시설 확충	17,584	구비 100
6-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	비예산

6-1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서울시의 지체장애이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장애인복지법제810호'15.1.14)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건축협의(허가,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처리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적절한 운영·관리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6. 1월 ~ 12월
-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 중구지회
 - 지체장애이편의시설지원센터(2005년 설립) : 3명
 - ▶ 센터장 1명(무보수), 기술요원(건축전문가) 1명, 일반요원 1명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신·개축 건축물 건축협의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홍보·안내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실태조사 참여 등
 -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홍보·유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실시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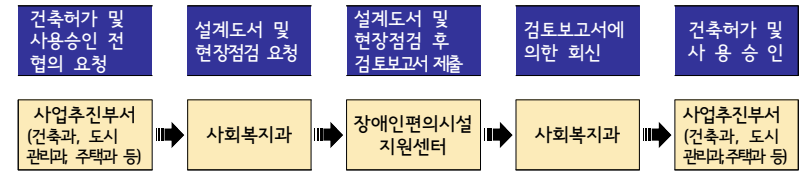
2015년 추진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관리
 - 모니터요원 5명 운영 및 교육, 근무상황, 점검업무관리
- 건축협의 등 편의시설 지원사업 실적

계	건축허가	사용승인	민원상담	홍보	실태조사
884	416	177	91	110	90

지체장애이편의시설 지원센터 업무강화

- 신·개축 건축물 건축협의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
 - 협의절차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관리 철저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의 점검능력 강화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 철저
 - 다양한 모니터링 조사업무 능력 제고
-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체장애이편의시설지원센터(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및 홍보 실적 관리
 - 건축협의를 통한 설치율 향상
 - 편의시설지원센터 추진 업무전반 지도감독 실시
- 지체장애이편의시설지원센터 협약체결 운영
 - 협약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 2005년부터 1년 단위로 협약체결(서울시 지침에 의거)
 - 협약내용
 - 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 사업실시의 원칙,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등

지원센터 관리

- 추진기간 : 연 중
- 관리방법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및 건축협회의 처리 내역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추진 관련 전반사항 지도·감독 실시

운영 보조금 지원 및 회계관리

- 사업비 교부절차 : 분기별 예산교부, 정산·실적보고
 - 지원센터 ⇒ 구 : 분기별 전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
 - 구 ⇒ 시 : 분기별 전분기 정산·실적 보고, 교부신청(매분기 개사월 5일전)
 - 시 ⇒ 구 : 분기별 예산 교부
 - 구 ⇒ 지원센터 : 분기별 예산교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소 요 예 산

- 총 사업비 : 91,076천원(시비 50%, 구비 50%)

기 대 효 과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준수 기여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5-4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추진방향

-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이동편의 증진 도모
- 장애인 편의시설 데이터 구축으로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지적사항의 시정·개선을 통한 편의시설 증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계도 및 홍보 실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연중
- 구성운영 :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요원 5명
- 모니터링 대상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중구 관내 빌딩 및 공공시설 등) 실태 전수조사
 -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대상시설 사전 예비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 임금지급 : 1인당 월 1,261천원(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배치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구지원센터

세부추진계획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배치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구지원센터
 - 모니터링요원 선발 : 5명(장애인당사자)
 - 자치구별 장애인 공개 선발
 - 지체·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유형이 참여하도록 선발
 -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 후 자치구별 편의시설지원센터장이 상담을 실시한 상담의견서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 모니터링단 운영
 - 2팀씩 운영(장애유형별 팀원 2명 또는 3명)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9시 ~ 18시까지 (일 8시간)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월~금요일, 주5일 근무)
 - ※ 휴한기 및 휴가에는 긴급적시무실근무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 실시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 실태조사

구 분	점 검 대 상	조 사 일 정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국가기관 및 지자체 청사 등	3월
공공기관 지적사항 개선내역 재점검	국가기관 및 지자체 청사 등	10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 1~2월, 11~12월
 - 휴한기에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민원 발생지역 중점 계도·홍보
-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대상시설 사전 예비조사 : 수지
 -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과 모니터링 요원 합동으로 실시

모니터링 지적사항 관리

- 편의시설지원센터로부터 지적사항을 제출받아 공공시설관리기관(민간시설은 행정지도)에 통보 후 시정·개선시까지 지속 관리
- 공공시설 관리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불가시 개선계획 수립하여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추후 시정·개선 결과를 통보받아 재점검 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75,660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 인건비 : 월1,261,000원 × 5명 × 12월 = 75,660천원
 - ※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추진

기대효과

- 장애인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기여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서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6-3 장애인 편의증진 제공 및 시설 확충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방향

- 정보화 사회의 균등한 정보 제공
-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
-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연중
- 편의제공 주요업무
 - 영상전화기 유지관리 : 사용료 및 인터넷요금 지급
 -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배부
 - 배부대상 : 저소득 중증 장애인 약 200세대
 - ※ 시각 중증 장애인은 중구광장 점자판독음테이프를 지원받으므로 제외
 - 배부일수 : 월 2회
 - 신문보급 : 서울시 장애인 정보신문사
- 주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구분	수량	설치장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4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영상전화기(수화통역)	17	동주민센터(15개동), 구청, 보건소,
확대경 및 촉지도 등	18	동주민센터(15개동),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세부추진계획

- 소규모 편의시설 수선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수선내용 : 급속충전기 등, 기타 소규모 편의시설 고장, 노후 시 수리
- 영상전화기 유지 관리
 - 매월 사용료 및 인터넷 요금 지급(17개소)
- 장애인정보신문 배부
 - 추진기간 : 연중
 - 배부수량 : 월 400부(200세대 월 2회)
 - 추진방법
 - 연 1회 신문사에 배부대상자 명단 통보
 - 배부대상자에게 신문사에서 우편 배부
 - 배부완료 증빙자료 등을 첨부 신문사의 구독료 청구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7,584천원(구비 100%)

- 예산과목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17,584	
장애인편의제공	장애인정보신문배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000 7,584	

기대효과

-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편의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강화와 사회통합 유도
- 균등한 정보제공으로 삶의 의욕고취에 기여

추진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추진 방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계도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적정 관리

사업 개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3%
 - 유도 및 안내표시
 - 시설주가 표지판 규격에 맞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단속인력 : 자치구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 ※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 주차단속 공무원 및 단속장비 활용가능
 - 2015년도 단속 실적
 - 1,646건 / 164,600천원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 홍보기간 : 연 중
 - 홍보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에 게재
- 집중 단속 기간 지정
 - 수시단속 : 신고에 따른 민원 처리
 - 집중 단속 기간 지정 단속
 - 단속기간 : 상·하반기(연2회)
 - 집중 단속 기간 중 홍보 및 계도 실시

소요예산

- 비예산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 사전 방지
- 불법주차 차량 제재조치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